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과제 연구원 임용지침

(2023.1.1.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과제 연구원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란 상명 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각종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에 따라 한시적인 기간과 목적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소속) 연구원의 소속은 천안산학협력단으로 한다.

제4조 (자격) ① 연구원의 세부 직급은 책임급 연구원(연구책임자), 선임급 연구원, 박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 학사급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② 해당 직급별 자격조건 및 인건비 기준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 외부인건비의 단가 책정 기준 <별표1> 1-1. 인건비 관련 외부인건비의 단가 책정 기준을 따른다.

제5조 (임용절차 및 임용서류) ①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과 계약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임용 15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임용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 등록(변경) 신청서
2. 연구(보조)원 임용 신청서 <서식1>

제6조 (임용기간) ① 연구원 임용기간은 당해 연구과제 및 사업 참여기간을 원

칙으로 한다.

- ② 연구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1달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연구(보조)원 임용 신청서 <서식1>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책임 및 의무) ①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연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관계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기밀이나 직무상 취득한 중요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원은 근무 중 고의, 태만, 소홀, 부주의 등으로 산학협력단(우리대학 포함)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의 책임 및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관리 감독의 태만, 소홀, 부주의 등으로 산학협력단(우리대학 포함)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의 책임 및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계약) 연구원은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와의 3자 간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 (인건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원 임용 신청 시 인건비 재원(4대보험료 및 퇴직연금 포함)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의 월지급액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 외부인건비의 단가 책정 기준 <별표1> 1-1. 인건비 관련 외부인건비의 단가 책정 기준을 따른다.

④ 인건비는 인건비지급계획에 따라 매달 2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원 급여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서

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매달 15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인건비의 지급은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정기인건비의 경우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서 및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서로 이를 갈음한다.

제10조 (사직) 연구원 사직 시에는 사직 1달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사직 관련 서류 <서식5>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3. 1. 1.부터 적용 시행한다.

<서식1> 연구(보조)원 임용 신청서

연구(보조)원 임용 신청서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과제 연구원 임용지침”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연구(보조)원 임용을 신청합니다.

| ■ 연구원 () | | ■ 연구보조원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임용구분 | 신규임용 () 재임용 () | 최종출신교 | |
| 최종학위 | | 추천자 | (인) |
| 추천사유 | | | |
| 수행연구과제명 | | | |
| 임용기간 | ~ | | |

- [붙임] 1.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최종학위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동의서 1부 <별지1>
4. 서약서 1부 <별지2>
5.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별지3>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근로계약서 3부 <별지4>
8. 사회보험 취득 요청서 <별지5>

* 재임용일 경우 변동사항이 없으면 [붙임5~8]만 제출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_____ (서명/인)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장 귀하

| | 담당 | 팀장 | 단장 |
|----|----|----|----|
| 결재 |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2조, 제24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이하 당사)의 연구과제 관리서비스(연구개발과제 수행, 각종 수당 지급 및 과제참여 연구원 관리, 제증명발급 등)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필수적 정보 및 동의여부를 본인이 직접 해당란에 작성,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 이용 · 처리 목적

- 연구과제 관리 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 연구과제 참여 정보 관리 시 개인정보 관리
- 연구비 신청 및 지급 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급
- 정기인건비 지급 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급
- 제증명발급 등 연구수행 증빙
- 근로자의 경력증명 등 사용증명서 발급
- 「소득세법」 제145조와 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등에 의한 원천징수 신고

※원천징수의무자 등 주민번호 기재 명시

2. 수집 · 이용 · 처리 항목

- 필수적 정보(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 | 소속 | | 직위 |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이메일 | @ | 연락처 | |
| 주소 | | | | | |
| 입금계좌 | 은행 | | 예금주 | | |

- 선택적 정보

- 없음

3. 수집 · 이용 · 처리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과제 관리서비스」 만료 시까지 보존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제9항에 의거하여 참여 연구개발과제의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5년 이후부터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 근로자의 경력증명 등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근로자 퇴직 후 3년을 경과해서도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 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구과제 참여 및 각종 수당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처리 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처리 동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 | | |
|---------------|--|----|-----|
| 수집 · 이용 동의 | 당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적 정보 (해당없음) | 성명 | |
| 고유식별 정보동의 | 당사가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서명 | (인) |
| 20 년 월 일 | | |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장 귀하

서 약 서

소 속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연구(보조)원으로서 그 직책을 부여받은 본직을 수행함에 있어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귀 교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제 규정에 의한 책임과 의무의 충실한 이행
2. 학교 보안(기밀)의 보호 및 누설 금지
3. 학교의 위신과 명예 수호의 의무
4. 학교 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적인 행위의 근절 및 사전 예방

202 년 월 일

서 약 인 _____ (서명/인)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
|-----|----------------------------|
| |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본인은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천안동남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갑”, “을”, “병”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이 수행하는 특정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다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당사자

| 구분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기관 및 직위 | 연락처 |
|------------------------|-----|----------------------|----------------|--------------|
| 사용자 (“갑”) | 왕한호 | 312-82-10241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장 | 041-550-5011 |
| 근로자 (“을”) | | | 연구원 | |
| 기관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병”) | | | 연구책임자 | |

제 1 조(목 적)

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갑”, “을”, “병”이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계약기간)

- ① 본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 년 월 일부터 202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본 계약은 계약만료일 도래 시 당연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고 “갑”은 “을”에 대하여 법률상 고용의무를 갖지 않는다.

제 3 조(근로의 내용)

- ① “을”의 신분은 연구원으로 한다.
- ② “을”의 근로장소는 로 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단 근무장소가 교외 일시 “병”은 “갑”에게 이를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③ “을”의 업무 : “을”的 업무는 참여사업(과제)의 완성을 위한 ‘ ’이며, “을”的 참여사업(과제)는 아래와 같다. 단, “갑”은 필요에 따라 상기 이외의 업무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的 명령,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 | 과제명 | 연구책임자 |
|------|-----|-------|
| | | |

제 4 조(근로시간)

- ① 소정근로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단,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1. 근로일수 :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동일)

(9시부터 ~ 18시까지 (휴게시간 12시부터 ~ 13시 까지, **식사시간 포함**))

- ② “을”은 “갑”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외근로)를 지시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시간외근로는 “갑”的 사전 요청 또는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임의 조기출근 및 임의 잔류는 시간외근로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취업조건으로 한다.

| | |
|---------------------|---------|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동의함 | “을” (인) |
|---------------------|---------|

제 4 조의2(휴가)

- ① “갑”은 “을”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갑”은 “을”이 입사후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입사후 1년 이상이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갑”은 “을”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25일을 한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④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무급생리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다.
⑤ 기타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⑥ 휴가는 3일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4 조의3(휴일)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일을 부여한다.

- ① 주휴일(일요일, 단 사업장의 특성으로 교대로 주중 평일날로 주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
③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④ 기타 휴일은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 5 조(임 급)

- ① “갑”은 “을”에게 매월 총 계약 월급금액 []원(일금이백칠십만원)을 급여로 (**당월**) 25일에 “을”的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산정기간: 당월 1일~당월 말일) 다만, 급여일이 금융기관의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입금 한다.

| 기본급(209시간, 주휴포함) | 월급여액 |
|------------------|------|
| 원 | 원 |

※시간외근로수당: (기본급/209시간)X시간외근로시간X1.5배(야간 0.5배), 발생 시 별도 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 ②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 및 가불금은 월급에서 공제한다.
③ “을”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 “갑”은 그 일수만큼 월급에서 해당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차감 후 지급한다.
④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제1항의 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6 조(책임 및 의무)

- ① “을”은 근무 중 고의, 태만, 소홀, 부주의 등으로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즉시 변상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② “을”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병”的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④ “을”은 본인의 월급에 관하여 동료 및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만일 누설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⑤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청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성실히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을”은 퇴직 시 사직서를 제출과 함께 “갑” 소유 제반 비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⑥ “병”은 “을”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관리 감독의 태만, 소홀, 부주의 등으로 “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변상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 7 조(안전 관리)

- ① “을”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을”的 참여사업(과제)의 책임자(관리자)로서 안전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중 “을”的 안전을 확보하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1. 안전 교육 시행
 2. 안전 계획 수립 및 근로 장소 내 안전 수칙 비치
 3. 필요 안전 장비 구비, 제공 및 관리
 4. 안전 점검 시행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 ③ “병”은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②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본 계약관계를 해지(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的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에 불성실한 경우
2. “을”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상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을”이 본 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을”的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연간 무단 지각, 조퇴, 결근이 통산하여 3회(1일은 1회) 이상인 경우
5. “을”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근무조건 내지 근무태도를 소홀히 하여 기숙사 운영에 차질을 주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7. “을”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 9 조 (권리의무의 전속)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 10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는 “갑”的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1 조(보 칙)

|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1부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 “을” | (인) |
|------------------------------|-----|-----|
|------------------------------|-----|-----|

- ① 본 근로계약의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② 을의 인사노무관리 및 제세공과금 신고, 납부를 위해 갑이 을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퇴직후 5년간 보관함에 동의한다.

| | | |
|-----------------------------|-----|-----|
|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정보) 수집에 이의없이 동의함 | “을” | (인) |
|-----------------------------|-----|-----|

③ 본 계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갑”的 취업규칙 또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을”은 “갑”的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동의한다.

| | | |
|--------------------|-----|-----|
|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이에 동의함. | “을” | (인) |
|--------------------|-----|-----|

2021년 12월 01일

사용자(갑)

상호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내
사업자번호 : 312-82-10241
대표자 : (인)

근로자(을)

주소 :
생년 월일 :
성명 : (인)

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병)

기관명 :
생년 월일 :
성명 : (인)

<별지 5>

사회보험 취득요청서

[보험대상자 정보]

| 제외보험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 | 비고 |
|-------------------------|----|--|------|-------------------------------------|----|
| 건강() 고용() 연금() | 국문 | | | 우편번호 : 주소 : 핸드폰 : E-mail : | |
| | 영문 | | | | |

[보험대상자 계약근거]

| | | | | | |
|-------|---|--------|---|-------|------|
| 계약번호 | | 소속기관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 기관책임자 | 왕 한호 |
| 계약급여액 | 원 | 급여지급과제 | | | |
| 계약기간 | | 직급(직무) | <input type="checkbox"/> 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연구보조원 <input type="checkbox"/> 행정(보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건강보험증 피부양자]

| 피부양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동거여부 | 가족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주민등록 등본)

20 년 월 일

보험대상자: (인)

연구책임자: (인)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장 귀하

사 직 원

| | | | | | |
|---------------------|--|------|---|-------|--|
| 인적사항 | 성명 | | | | |
| | 생년월일 | | | | |
| | 연락처 |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 | 주소 | | | | |
| 최초임용일자 | 년 | 월 | 일 | | |
| 사직일자 | 년 | 월 | 일 | | |
| 사직사유 |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정 <input type="checkbox"/> 계약만료 <input type="checkbox"/> 권고사직 | | | | |
| 실업급여신청여부 (이직확인서)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small>*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신청가능 함</small> | | | | |
| 퇴직자동의 (퇴직후 금품청산) | <small>본인은 사용자(기업)와 합의에 의하여 법정지급기한(14일)을 초과하여 금품청산이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small>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 | | |

상기 본인은 위의 사유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은 퇴직 후에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인)

| 결재 | 담당 | 팀장 | 단장 |
|----|----|----|----|
| | | |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귀하